

제 1420 호
1988.9.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용 과
편집인 : 공 보 관 윤 두 영
전 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공판시행
대한민국헌법영정집추록제부 - 법부 5

◎ 교육규칙
제 328호 : 서울시고등학교입학선발고사및 자급학교입학선발수험료징수규칙
중개정규칙 6

◎ 훈 령
제 673호 : 서울시공무원국의 여행규정 제정규정 6

(이면계속)

연													
월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159

◎ 고 시

제 685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7
제 688 호 : 최고기및패지교기연동가격고시	17
제 691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7
제 700 호 : 민영주택임주자모집공고승인	18
제 232 호 : 소음규제지역지정및소음규제기준	19

◎ 공 고

제 560 호 : '87 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공고	20
제 575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21
제 576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22
제 578 호 : 우주부동산공고	24
제 579 호 : 도시계획안공고	25
제 581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행정처분	25
제 583 호 :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	26
제 584 호 :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일부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변경지정	28
제 585 호 : 비료단추진사업과에대한행정처분	28
제 587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29
제 588 호 : 석소문구역제 4 지구재개발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위한공람공고	29
제 593 호 : 제 2 종전기사업면허영정지공고	30
제 598 호 : 남시터시설관리위탁양도·양수허가	30
제 601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허가에따른공람공고	31
제 606 호 : '88 상반기주택차제불합격제품과기공고및판매금지	32

◎ 구 고 시

제 17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변경	32
제 20 호 :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허가변경	33

◎ 구 공 고

제 52 호 : 관인산조공고 - 양천구 -	34
-------------------------	----

◎ 사업소고시

제 19 호 : 하천제속점용및변경허가	34
----------------------	----

제 20 호 : 라천광용허가 35
제 21 호 : 신박운람허가고사 35

◎ 사업소공고

제 1 호 : 회계원계 공무원직인등록및채기공고 - 능촌지도소 35

◎ 사 령

공 문 시 행

(판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번호 02142-1554

731-6157

1988. 8. .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후 배부

1.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제 14 회 추록을 다음과 같이 배부하니
수령 즉시 기재정리하여 법령집 활용에 차질없도록 할것.

가. 배부기간 : '88.8.22-8.26

나. 배부대상 : 대한민국현행법령집 보유부서

다. 배부장소 및 방법

○ 본 청 : 법무담당관실에서 각과 본임물품을납원 인장 날인
수령

○ 구청 및 사업소 : 운송배부

2. 대본 보유부서는 기재정리상태를 점검하여 미정리된 추록을
제 14 회 추록과 함께 수령정리하여 민권관리에 철서를 기할것. 글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

서 울 특 별 시 장

법 무 담 당 관

수신처 : 서판01, 서과01-03, 05, 09, 10, 16-19, 21-32, 34, 35, 37, 38,
40, 44, 45, 47, 48-52, 53, 54, 57, 60-66

교육규칙

(공포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선발고사료 및
자급학교 입학선발수험료 징수규
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8. 8. 2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직무대리부교육감 이준해

◎서울특별시교육규칙제 328 호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선발고사료 및
자급학교입학선발수험료 징수규칙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입학선발고사료
및 자급학교입학선발수험료 징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란을 다
음과 같이한다.

학교별	종	구	분	징수한도액	비	고
고등학교	고	사	료	3,500원		
고등기술학교	수	험	료	2,500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수	험	료	2,500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훈령

◎서울특별시훈령제 673 호

서울특별시공무원국외여행규칙제정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여행규정과 공무원복무규정 제23조
의 규정해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

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및
사직용무의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고위공직자가 국외 여행할 경우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소속 전공무원
(소방직공무원 포함)
2. 서울특별시 지방공사 임직원

제2장 공무원국외여행

제3조 (공무원국외여행허가) ①제2조
에 규정된 공무원등이 공무로 국

의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공무국의여행허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 4 조 (심사위원회의설치)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무국의여행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 5 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공무에 의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 1. 여행의 필요성
- 2. 여행자의 적격성
- 3.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 4. 여행인원
- 5. 여행경비
-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 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7 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부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5 인이내의 국장으로 한다.

제 7 조 (위원장등)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인사과장이 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 8 조 (심사위원회의운영) ①심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주 1 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전이 없을 때에는 정기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재적위원으로 본다.

③심사위원장은 회의의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의결서를 작성케하여 재적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 2 항의 의결에 가름할 수 있다.

제 9 조 (심사절차) ①주관국장등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20 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요청하여야 한다.

- 1. 여행계획서 (별지 제 1 호서식)
- 2. 이력서 (별지 제 2 호서식)
- 3. 자료수집계획서의 및 귀국보고서 제출확인증 (별지 제 3 호서식)
- 4. 항공운입증명서 (G. T. R)
- 5. 여행방침서 및 증명서류

②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자에 대하여는 공무국의여행명령을 한후 이 사실을 요청기관과 총무처장관 및 외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5 급 이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 심사후 총무처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여행명령 한다.

<p>③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국장등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여행변경 신청을 할수 있다. 이경우 시기의 변경 및 3일이내의 기간연장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허가권을 위임한다.</p> <p>제 10 조 (여행계획사전협의) ①주관국장등은 공무 국외여행계획 수립시 미리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내무국장 (인사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②각종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 계약등에 의한 공무 국외여행도 사실상 시비 부담인 점을 감안 적정규모로 최소화하고,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 미리 인사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③공무 국외 여행계획 수립시에는 여행국의 관련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p> <p>제 11 조 (여행목적및 필요성심사) ①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를 이유로 한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는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p> <p>②세미나, 심포지움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p>	<p>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p> <p>③시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여행하는 전학, 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 견지훈련등은 그 목적이 당면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한 제한한다.</p> <p>제 12 조 (여행목적지심사) ①여행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방문 여부 2. 우리나라의 공관설치 유무 및 여행국의 대한 감정 3. 여행국의 정치정세 및 여행자의 신변 안전 문제등 <p>②여행목적지가 미수교국일 경우에는 사전에 외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 13 조 (여행자심사) ①현재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자를 우선한다.</p> <p>다만, 심사위원장은 여행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행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하도록 요구한다.</p> <p>②여행인원은 당해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한다.</p> <p>③동일목적으로의 여행인원이 1회</p>
--	---

<p>2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주가 분명하여야 한다.</p> <p>④초청에 의한 여행은 시장을 통하여 표시된것을 원칙으로하고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여행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허가하지 아니한다.</p> <p>제 14 조 (여행기간 및 시기선정) ①여행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1회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히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하며, 이 경우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주지역 (대양주포함) : 4일이내 2. 구미등 기타지역 : 6일이내 <p>②여행시기는 방문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때를 택하여야 한다.</p> <p>③국의 여행 허가를 받은후에 특별한 사유로 여행기간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제 15 조 (여행경리) ①여비의 산출은 국외여비규정 (지방공사 임직원의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②계약 또는 용역에 의한 여행은 그 내용과 목적이 부합되어야 한다.</p> <p>③산하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경비</p>	<p>부담 및 여행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행을 억제한다.</p> <p>제 16 조 (출국 및 귀국신고) 공무국의 여행자중 4급이상 공무원 및 지방공사 임원은 시장과 부시장에게, 5급이하 공무원 및 지방공사 직원은 주관국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 17 조 (외국자료수집) ①외국자료수집 계획은 시정개발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심사요청할때 외국 자료수집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 3 호서식) 다만 여행자가 5급이상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정무기록보존소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②여행자가 수집할 자료는 여행목적에 구애되지 않고 여행목적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행정제도등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p> <p>③시정개발담당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 18 조 (귀국보고서) ①여행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 5부와 수집자료 2부를 인사과장을 경유하여 시정개발담당관 (5급이상 국가공무원은 정무기록보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시정개발담당관은 수집자료등을</p>
---	--

분석, 연구, 정리 및 보관하며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여행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국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제 19 조 (여행자의 사무관리) 소속기관장등은 공무 국외여행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상당기간 관련직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적용무의 국외여행

제 20 조 (허가권자) ①공무원 복무규정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적 용무의 국외여행 (이하 "사적여행"이라 한다) 허가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 시장
2. 구청 및 동사무소 소속 공무원: 구청장
3. 지방공사 소속 직원: 지방공사 사장

다만, 임원은 주관국장을 경유하여 시장이 허가

②사적 용무의 국외여행 허가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 21 조 (사적여행사유) ①사적 여행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친 의 경조사 참석 및 결혼목적등 필요한 경우
2. 질병의 치료

②제 1 항제 2 호의 질병은 공무원 재용신체검사규정 제 3 조 제 1 항 각호의 의뢰기관에서 진단한 결과 국내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판정된 경우이며, 공무원 연금법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의뢰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 22 조 (여행기간) ①경조사 참석등의 여행은 개인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허가하되 1 회 여행기간은 12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 1 항의 경우 공무원 근무기간 3년 미만인자와 연가일수 초과자 및 잔여기간이 여행목적 달성에 곤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질병 치료를 위한 여행기간은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제 1 항 제 1 호 사유의 휴직기간 또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 18 조의 병가기간내로 한다.

제 23 조 (허가절차) ①사적 여행허가를 연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 4 호 서식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후 여행발급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20 조에 정한 허가권자는 사적 여행허가시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여행목적지의 정치경제, 공관설치 여부, 우리나라와 수교여부
2. 여행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검토
3. 본인의 연가기간, 업무행렬 및 업무 대행자 지정등
4. 동일업의 빈번한 국외여행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억제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한다.

제 24 조 (출국 및 귀국 신고) 사적 여행자의 출국 및 귀국 신고는 제 1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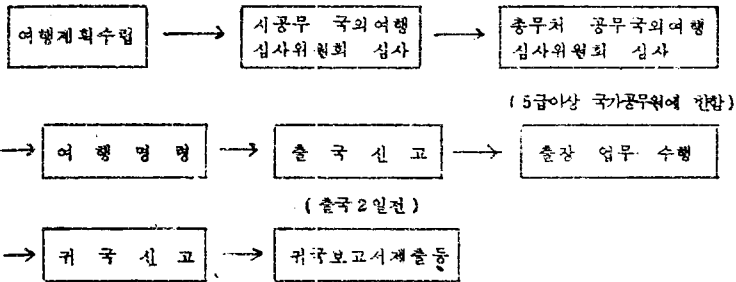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제 654 호) 은 폐지되며 종전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국외여행 업무 처리 지침은 이 훈령으로 대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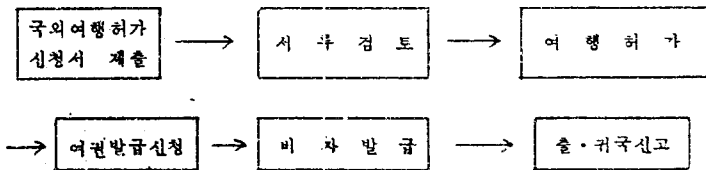
(별표 1)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 절차



(별표 2)

사적용무의 국외여행 허가 절차



다. 여행경비									
성 명	계	항공료	체 계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	\$	\$×일 =\$	\$×일 =\$	\$×일 =\$	\$	\$	\$	
나. 여행일정									
일 자	출 발 지	도 착 지	방 문 기 관	업 무 수 행 내 용	집 추 예 정 인 물				
	서 울	서 울							

3.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본 및 사유서 첨부	
사 유	첨부사본 및 사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청 ○ 제 약 ○ 미수교국 여행 ○ 신원특이자 (신원조사업무 처리 지침 제 9 조 해당자) ○ 산하기관소속의 여행자 ○ 여행기간 15일 초과 ○ 출국예정일 20일전 미제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청장 및 번역본 계약서 및 번역본 의무부·안기부의 합의공문 신원조사회보서 내부결재 장기출장사유서 (32절 사용) 지연제출사유서 (32절 사용)
(별지 제 2 호서식)	
<u>이 력 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u>학 력</u>	
기 간	학 교 명
<u>경 력</u>	
기 간	근 무 경 력
<u>최근 3 년 간 국 외 여행 경력</u>	
기 간	여 행 목 적 (여 행 국)
위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19	



(별지 제 3 호 서식)

자료수집계획서의 및 귀국보고서등 제출확인증

1. 여행계획

소속기관		원판처		(동행인원) (동행인수)		명
여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급		
여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여행구	방문기관					
여행목적						

2. 자료수집계획

-
-
-

3. 귀국보고서 및 수집자료 제출사실(최근 3년이내의 재여행자에 한함)

성명	여행기간	여행목적	제출여부	
			보고서	자료

작성자: ①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정개발담당관

소속기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자는 공인 선내국민 기재 • 소속기관(또는 주무부처) 인사담당자는 여행계획과 과거여행 기록을 확인하고 (참, 과거여행 사실이 없을 경우 3의 공인 선내에 "해당없음"이라 기재) 직 설명 기재후 날인 • 1일 2부 작성후, 정부기록보존소장에게 제출
--------	---

[별지 제 4 호 서식]			
<u>국외여행허가신청서</u>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여행기간	19 ~ 19 (월 일간)		
여행국		관용여권소지여부	유, 무
여행목적			
근속기간		승적용무 여행실적	유 (회), 무
휴직기간 (업)	- (월 일)	휴가기간	일
<p>위와같은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성명 ①</p>			
<p>의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허가함</p> <p style="text-align: center;">198</p> <p style="text-align: center;">소속기관 장 (직인)</p>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685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 8.

서울특별시장

다 음

- 1. 사업명 : 민영주택(연립)건설사업
- 2. 사업주체 : 서대문구연희동 172-4호 ㈜중진주택 대표 박종욱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마포구중동 47 번지
나. 대지면적 : 691.00㎡
다. 규 모 : 연립주택 3층 1동 18세대
- 4. 사업시행기간 : 1988.8~1988.12

◎서울특별시고시제 688 호

쇠고기및돼지고기연동가격고시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농림수산부고시 제 85-47 호, '85.8.22)제 8 조 및 제 9

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8. 8. 17

서울특별시장

- 1. 쇠고기연동가격(정육 500g당) 4,300 원
- 2. 돼지고기 연동가격(정육 500g당) 1,500 원
- 3. 시행일 : 1988.8.19부터

◎서울특별시고시제 691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 8.

서울특별시장

다 음

- 가.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 나. 사업주체 : 삼우주택건설㈜ 대표 서운권
-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규모
(1) 위 치 : 구로구오류동 156-30 외 2필지

- (2) 면 적 : 1,024.89평방미터
- (3) 규 모 : 연립주택 3층 1동
18세대
- (4) 사업시행기간 : 88.8-89.5

◎서울특별시고시제 700 호

민영주택입주자모집공고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49번지 1호 지상에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조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 8. .
서울특별시장

- 1. 사업명 : 민영주택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2. 사업주체 : 경원주택 장영규외 4인
- 3. 사업시행지
가.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49번지 1호
나. 대지면적 : 3,563㎡
다. 규 모 : 아파트 5층 2동 80세대

민영주택입주자모집공고승인내역

- 1. 사업주체 : 경원주택 장영규
- 2. 위치 및 규모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49번지 1호
○ 규 모 : 아파트 5층 2동 80세대

3. 형별 분양면적 및 세대수

단위 : (㎡)

형 별	전용면적	공유면적	분양면적	세대당토지 분양면적	세대수	비 고
72.54	55.89	16.65	72.54	43.06	40	
76.68	59.40	17.28	76.68	45.53	40	

4. 공급대상 부대 복리시설명 및 규모

어린이놀이터

5. 공급계획대상(일반 분양시설)복리시설명 규모

6. 평형별 분양가격 (단위: 천원)					
형	별	분 양 가 격	평 당분양가격	비 고	
	72.54	26,650	1,212		
	76.68	28,170	1,212		
7. 기타세부내역: 별첨					
◎서울특별시고시제 232 호 소음규제지역지정및소음규제기준			제 34 조 규정에 의거 소음규제지역 및 소음규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판계도서는 서울특별시 환경과와 관할구청 (환경과)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8. 9. 1 서울특별시 장		
1. 환경보존법 제 33 조 및 환경보건법					
[다 음]					
가. 소음규제지역					
지	역	도시계획지역	위	치	면적㎡ (평)
올림픽공원	주변일대	농 지	송과구방이동		2,193,750 (664,740)
올림픽선수촌	기자촌	주 거			1,275,000 (386,360)
올림픽해밀리타운	주변일대	주 거	송과구가락동, 문정동		1,465,620 (444,130)
에인프렉스센터	주변일대	상 업	강남구삼성동159		1,990,000 (603,000)
- 소음규제지역은 별첨도면 표시와 같다. (도면생략)					
나. 소음규제기준					
1) 도로별 소음규제기준					
지	역	도시계획	규 제 기 준		기 간 비 고
			지 역 별	(단위: Leq dB(A))	
			06:00-22:00	22:00-06:00	
올림픽공원주변	농 지		70	60	88.9.5
올림픽선수촌	주 거		70	60	~ 10.5
기자촌주변					

지 역	도시계획 지역별	규 제 기 준 (단위: Leq dB(A))		기 간 비 고
		06:00-22:00	22:00-06:00	
올림픽웨밀리 타운주변	주 거	70	60	88.9.5 ~ 10.5
대인프레스센터 주변	상 업	70	60	

2) 특정장비 소음규제기준
 - '88.5.28'고시된 서울시고시 제 133 호 특정공사장비 소음규제기준에 정한.
 다. 소음규제지역 지정기간: '88.9.5 ~ '88.10.5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560 호

1987 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

1987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회계별 세

입세출결산사항을 지방자치법제 125조 제 2항 및 서울특별시 세무회계규칙 제 14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8년 월 일

서울특별시 장

(단위: 원)

회 계 별 / 구 분	예 산 현 액	세 입 액	세 출 액	이 월 액
일반회계	1,146,590,945,000	1,073,551,136,954.44	944,971,367,789	128,579,769,165.44
국민주택비특별회계	122,218,000,000	67,313,994,111	64,232,622,717	3,111,371,394
주택개개발비 "	72,811,000,000	69,142,742,611	26,517,465,444	42,625,277,167
도지구획정리사업 비특별회계	112,025,000,000	226,987,892,761.67	64,108,881,734	162,879,011,027.67
하수처리장비 "	96,052,000,000	84,528,851,095	71,069,049,229	13,469,801,866
유료도로비 "	11,518,000,000	11,125,239,880	5,593,401,270	5,526,837,610
의료보호기금 "	18,065,000,000	18,232,240,431	17,849,642,753	382,597,678

회계별 구분	예산현액	세입액	세출액	이월액
특정전속물정리비 특별회계	12,825,000,000	13,324,636,903	7,992,970,983	5,331,665,920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33,840,000,000	34,822,324,760	14,167,793,090	23,654,531,670
올림픽사업비 특별회계	160,632,000,000	142,615,234,839	139,152,668,592	3,462,566,247
복합산업개발 사업비특별회계	367,758,000,000	372,338,473,536	290,769,336,064	81,569,137,472
사용료수수료통합 진수비특별회계	5,705,000,000	5,423,648,271	4,997,797,330	725,850,941
새마을소득특별지 원사업비특별회계	2,506,000,000	2,308,519,109	2,355,500,000	153,019,109
수도사업비특별회계	236,049,000,000	223,425,473,806	197,980,173,143	25,445,300,663
병설사업비	7,092,000,000	6,213,070,869	5,038,398,677	1,174,672,192
저하철운수사업비 특별회계	88,211,000,000	92,160,807,170	87,361,990,000	4,798,817,170
도시재개발사업기금	79,243,000,000	77,243,037,787	68,897,372,921	8,345,664,866
재해구호사업기금	6,784,000,000	6,838,151,734	1,945,521,459	4,892,630,275

○서울특별시공고제 57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법 제48호(74.3.15)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도로)의 사업실시 계획인가에 따
른 서류의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 조의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27 조의 2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
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는 본 공
고로 가름합니다.

가. 공람장소: 송파구청 토목과
(전화 410-3405)

나.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1988. 8. .

서울특별시장

- 공람개요 -	L = 280 m
1. 사업명 : 거여동 198-234 번지의 1 개소 도로포장공사	4.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1년
2. 사업시행지 거여동 198-21 ~ 234-2 거여동 178-22 ~ 178-53	5.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3. 사업규모 : 도로개설 B=8~10m	6. 기타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문의 제출바람.

1. 토지조사

위 치	지 목	면적 (㎡)	수 용		토 지 대 장 상 소 유 자	
			지 번	면적(㎡)	주 소	성 명
송파구거여동198-22	건	255	거여동198-22	255	송파구거여동192-3	강대욱의 5인
" 198-7	건	400	" 198-7	400	거여동251-1	강 대 현
" 198-16	건	529	" 198-16	529	송파구가락투산1-1	유 훈 원
" 234-77	도 로	208	" 234-77	208		서 울 특 별 시
" 234-67	대	31	" 234-67	31	송파구거여동234-9	김 중 규
" 234-45	건	543	" 234-45	543		서 울 특 별 시 (강 동 구 청)
" 178-23	도 로	1,969	" 178-23	1,969	중구에장동B-44	송 철 은
" 178-118	도 로	2	" 178-118	2	강동구성내동181-51	이 차 길
" 178-119	도 로	2	" 178-119	2	송파구거여동178-29	서 상 범
" 234-15	잠종지	415	" 234-15	415	시흥군서면광명리 148-2	이 재 순

◎서울특별시공고제 57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
계획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60 호(75.10.10)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고시된 풍납동(249-20)-(247-2)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 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행자는 본 공고로 가통합니다.
가. 공람장소 : 송파구청 토목과

<p>(전화 410-3405~5) 나. 공람기간: 1988.8 ~ 1988.11.15 1988. 8. . 서울특별시 - 공람개요 - 1. 사업명: 송파구 풍납동(249-20) ~ (247-2)간 도로개설공사</p>	<p>2. 사업시행처: 풍납동(249-20) ~ (247-2) 3. 사업규모: 도로개설 B=6m, L=50m B=8m, L=62m 4. 사업시행기간: 인가일로부터 1년 5.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6. 기타: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문의 제출바람.</p>
<p><u>토 지 조 서</u></p>	

순위	위 치	지 목	면적	단위	소 유 자
1	풍납동 247-2	도 로	155	㎡	충북제천군제천읍중앙로 2가 12-7 송 영 복
2	" 248-19	대	41	"	경기도시흥군파천면관문리주공다파트 917-412호 최 석 대
3	" 248-20	대	41	"	송파구풍납동 248-15 김 세 환
4	" 248-21	대	80	"	성동구중곡동 258-20 오 금 식
5	" 248-23	대	16	"	송파구풍납동 248-9 배 기 원
6	" 248-24	도 로	14	"	동작구흑석동 231-40 김 필 순
7	" 249-10	대	69	"	성동구중곡동 18-12 오 금 식
8	" 249-12	대	11	"	서초구양재동 8-39 조 희 승
9	" 249-16	대	6	"	" "
10	" 249-17	대	52	"	송파구풍납동 249-7 정 찬 영
11	" 249-18	대	83	"	송파구풍납동 249-8 서 원 흥
12	" 249-20	대	67	"	송파구풍납동 249-9 서 정 조

지 정 물 조 서					
순위	위 치	품 명	수 량	단 위	소 유 자
1	풍납동 249-17	건 물 담 장 변 소	31 13 1	m m 식	송파구풍납동 249-7 정 찬 영
2	풍납동 249-18	건 물 담 장 라일락	48 2 1	m m 주	송파구풍납동 249-8 서 원 흥
3	풍납동 249-20	건 물 담 장 변 소	22 4 1	m m 식	송파구풍납동 249-9 서 정 조
4	풍납동 248-23	건 물	10	m	송파구풍납동 248-9 배 기 원

◎서울특별시공고제 578 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우리시에서 개발중인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다음 표시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소유권)가 있으신 분은 다음 신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 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

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을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신고기간: '88.8.24 ~ '89.2.23 (6 개월간)
2. 신고장소: 양천구청(재무과), 목동지구개발사업소 토목공사와
3. 재산의 표시: 무주 부동 산조서

1988. 8.

서울특별시장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양천구신정동	219-5	도로	638	일본국동경도국정구9단2정목3-11	비도번
2	"	229-51	도로	308	정성부원정2정목11	과전국
3	"	598-2	도로	360	일본국동경도국정구9단2정목3-11	비도번
4	"	294-8	구거	1,429	"	"
5	"	285-30	구거	119	"	"
6	"	534-5	전	192	경기도양평군양평읍양곡리137	산림청특
계				3,046		

<p>◎서울특별시공고제 579 호</p> <p>도시계획안공고</p> <p>1. 도시계획법 제 16 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련인에게 보입니다.</p> <p>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p>		<p>을 때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가. 공람기간 : '88. 8. 24 ~ '88. 9. 7 (14일간)</p> <p>나. 공람장소 :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전화 450-1385)</p> <p>1988. 8. 24</p> <p>서울특별시장</p>			
구분	도시계획안	위 치	규모	비 고	
변경	여객자동차정류장	성동구성수 2가 234-1 일대	3,793 ㎡	한성교통제지	
"	"	" 구리동 199-8	1,719 ㎡	"	
"	학 교	" 자양동 674 일대	31,697 ㎡	감 8,551 ㎡	
신설	도 로	" " 752-1	B = 6 ㎡ L = 158 ㎡		
<p>◎서울특별시공고제 581 호</p> <p>제 2 종전기공사업행정처분</p> <p>전기공사업법 제 31 조 1 호의 규정에 의거 제 2 종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p>		<p>처분하였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1988. 8</p> <p>서울특별시장</p>			
- 다 음 -					
면허번호	장 호	소 지 지	대표자	취소일자	비 고
1090	미동계전	중구산림동 207-3	박상필	88.8.20	전기공사업법 제 1 조 위반

◎서울특별시공고제 583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

1. 하수도법 제 6 조 및 제 1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 하수도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및 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는 별도 부지를 생략하고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1988. 8. .

서울특별시장

공람 및 공고 개요

1. 사용개시년월일: 별첨조서참조
2. 배수구역: 별첨조서
3. 사용을 거시하려는 공공 하수도 위치: 양평 4 가 114-153 간 하수도 공사 12 건
4.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 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분: 합류식

공 고 및 공 람 개 요

연번	위 치 (공사명)	시 설 개 요	사 용 개 시 년 월 일	배 수 구 역	구 분
1	양평 4 가 114-153 간 하수도 공사	D = 450 mm L = 450 m	'88. 6 25.	안양천우안	합류식
2	대림 2 동 1081 의 1 간 하수도 포장공사	D = 450 mm L = 465 m	'88. 8. 23.	도림천우안	"
3	당산동 383-389 의 1 개 소 하수도 공사	D = 500 L = 105 m D = 600 L = 70 m	'88. 8. 3.	안양천우안	"
4	당산 4 가 32 번지의 2 개 소 하수도 공사	D = 450 mm L = 600 m	'88. 3 31.	"	"

연번	위 치 (공사명)	시 설 개 요	사용개사 년 월 일	비 수 구역	구 별
5	양평 6가 2-90 간 하수도 공사	암거 (1.5 × 1.0) L = 171 m D = 1200 L = 160m D = 1000 L = 82.5m	'88. 5. 6.	안양천우안	합류식
6	신길 3동 296-363 간외 개소 하수도 공사	암거 (1.5 × 1.5) L = 222 m D = 1000 L = 320 m	'88. 8. 6.	도림천우안	"
7	대림 2동 1066-1031 간 하수도 공사	암거 (1.0 × 1.0) L = 282 m D = 450 L = 52 m D = 600 L = 82.5 D = 700 L = 85	'88. 7. 29.	"	"
8	대림 1동 878 외 1건 하수포장 공사	D = 450 L = 335m D = 900 L = 75m	'88. 7. 23.	"	"
9	신길동 405 및 337 주변 하수포장 공사	D = 450 L = 1050 m	88. 7 25.	"	"
10	신길동 196-160 간외 2 개소 하수도 공사	암거 (1.5 × 1.0) L = 115 m D = 900 L = 80m D = 800 L = 80 m D = 450 L = 175m	'88. 5. 26.	한강좌안	"
11	· 문래 1가 35-2 · 문래 3가 56-3 '87 및 교통사고 다발 지점 교통섬 설치공사	D = 450 L = 82.5 m	'88. 5. 10.	도림천우안	"
12	문래 3가 77-2 중소기업은 행정원주택조합아파트공사	D = 600 L = 117.5 m	'88. 6. 29.	"	"
13	문래 5가 14-15 번지 두삼 사우 조합아파트 공사	D = 600 L = 88.5 m	'88. 6. 15.	"	"
○ 사 업 비 : 567,525 천원					

◎서울특별시공고제 584 호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일부한지계획
변경인가및한지예정지변경지정

1. 건설부 공고 제 8 호 (' 88.1.23) 로 사업시행인가된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한지에정지 일부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 및 제 56 조 규정에 의하여 한지계획 변경인가 및 한지에정지 변경지정 하였기 이를 공고합니다.
2. 본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합니다.

1988.8.25.

서울특별시장

가. 한지 변경내용

- 1) 사업명 : 김포토지 구획정리사업
 - 2) 변경면적 : 19,760.5 평
 - 3) 변경필수 : 81 필
 - 4) 변경위치 : 강서구청입구 ~ 원당 4거리간 공항로변
- 나. 변경사유 : 주변간선도로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

◎서울특별시공고제 585 호

비료단속검사결과에대한행정처분

비료관리법 제 14 조 제 1 항 제 5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 제 3 호와 비료단속 업무처리요령 제 8 조 제 1 항 별표 1 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시행령 제 16 조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8.8.24.

서울특별시장

1. 허가번호 : 제 1 - 1 호
2. 허가년월일 : 1986.7.30.
3. 대표자 성명 : 김재방
4. 대표자 주소 :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산동아(아) 11 동 405 호
5. 사업장소재지 : 도봉구 방학동 720
6. 상호 : ㈜미원
7. 비료의 종류 및 품목 : 제 3 종 복합비료 10-0-8
8. 영업정지 기간 : 3 개월 (' 88.8.24-11.23)
9. 영업정지 사유 : 유기물 표증성분량 미달
 - 보증성분량 : 10 %
 - 검사 결과 : 7.84 %
 - 미달 량 : 21.6 %

◎서울특별시공고제 58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4 호('83.1.13)로 시정결정되고 서고 제 57 호('83.2.1)로 지적승인된 난곡길 확장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물 시행로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 및 동시행령 제 27 조 2 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8.8.25.

서울특별시청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06-128 - 신림동 668-60
-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난곡길 확장공사
- 다) 사업규모: B = 20 m, L = 1,200 m
-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청(관악구청장)
- 마) 사업적 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9.6.30 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목 및 소유권 권리명세
-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 아)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 자) 기타사항: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588 호

서소문구역제 4 지구재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783 호('84.12.26)로 사업시행인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318 호('88.4.30)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된 서소문구역 제 4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대경건설 대표 김중근의 1인으로 부터 도시재개발법 제 33 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있어 동법 제 1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 사업시행구역내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중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988.8.25.

서울특별시청

가. 변경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시행기간	'84.12.26 - '88.9.30		'84.12.26 - '89.6.30		
○기타사항	변경 없음		(변경된 인가내용과 동일)		
나. 변경사유			◎서울특별시공고제 593 호		
지구내 토지 및 건물 협의매수 지역에 다른 지장물 철거자연으로 인한 공가부족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공고		
다. 공람기간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2 항 3 호에 의 거 아래와 같이 제 2 종 전기공사업 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공고일로부터 30 일간			1988.8.25.		
라.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아 래					
면허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사 유
445	삼형건설(주)	김형만	역삼동 790-1	영업정지 2 달 (8.25 ~ 10.24)	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2 항
983	백운건설(주)	차재준	삼성동 65	*	3 호
◎서울특별시공고제 598 호			이를 고시합니다.		
낙서터시설관리위탁양도, 양수허가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환경관리 사업소와 창문실업(주)에 비치하고 일반에 보일다.		
1. 한강시민공원 낙서터시설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권리의 무 양도, 양수허가하였기 도시공원 법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1988.8.26.		
			서울특별시 장		



<p>가. 양도인 - 한국보훈복지공단 이사 (사장)</p> <p>(1) 성명 : 윤 종 화 (2)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199</p> <p>나. 양수인 - 한국보훈복지공단 관리법인 장훈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p> <p>(1) 성명 : 윤 재 철 (2) 주소 :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7-3</p> <p>다. 공원의 종류 및 명칭 : 한강시민공원 남서터 시설</p> <p>라. 권리, 의무와 내용 : 한강시민공원내 남서터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의무</p> <p>마. 권리, 의무 승계사항 (남서터시설 관리위탁)</p> <p>(1) 위치 : 광원지구, 이촌지구, 양화지구, 여의도지구, 반포지구, 잠원지구, 잠실지구, 풍납지구, 광나루지구, 독성지구</p> <p>(2) 면적 및 규모 : 한강연안에 설치된 남서발침대 (연장 26.5 km)</p> <p>(3) 기간 : '86.8-'89.6.24</p>	<p>◎서울특별시공고제 601 호</p> <p>도시계획사업 (도로) 시행허가에따른공람</p> <p>1. 서울특별시가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한 다음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의 2 에 의거 공람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에 공람합니다.</p> <p>2. 토지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p> <p>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공람하여 본사업에 따른 의견을 공람기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가. 사업개요</p>						
<p>사업시행지</p> <p>쌍문동 234-1 외 7 필지</p>	<p>사업종류및명칭</p> <p>도시계획사업 (도로) 쌍문동 235-4외 17 필지상 민영주택 외곽도로 개설공사</p>	<p>규모</p> <p>B=20 m L=80 m B=8 m L=186m</p>	<p>처공</p> <p>88.7</p>	<p>준공</p> <p>89.12</p>	<p>결정고시일자</p> <p>변경서고 386 호 (73.8.3) 서고 185 호 (73.12.5)</p>	<p>지적고시일자</p> <p>변경서고 673 호 (75.12.29) 서고 185 호 (73.12.5)</p>
<p>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전북전주세인 후동 2가 1577-2 성원건설 (주) 권운수</p>				<p>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 조서 : 생략</p>		

<p>라. 위치도 및 계획면도 : 생략</p> <p>마.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p> <p>바. 공람장소 : 도봉구청 토목과</p> <p>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토목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8.8. .</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청</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공고제 606 호</p> <p style="text-align: center;">'88 상권기주택자재불합격 제품 파기공고 및 판매금지</p> <p>공산품 품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 불합격 주택자재에 대하여 판매금지 및 파기 통보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8. .</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청</p>
--	--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품 명	판매금지및 파기수량	사 유	판매금지및 파기기간
13-4	국원건설	전형길	양천구신정동 873-2	시멘트 벽돌	10,000매	품질검사 불합격	88.8.29 - 88.9.8
13-15	성광기과	이병국	양천구신월동 512-1	시멘트 기과	1,000매	"	"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adding: 5px;"> 구 고 시 </div> <p>○서대문구고시제 17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변경</p> <p>1. 서대문구고시 제 22 호(87.6.11)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된 서울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p>	<p>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와 서울특별시조례 제 2126 호(86.12.18)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 도시경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임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8.16</p> <p style="text-align: right;">서대문구청장</p>
---	---

<p>- 허가내용</p> <p>가. 사업시행지 : 시대문구 연희동 55-1 일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서울의국인학교 교사증축</p> <p>다. 사업시행면적 : 54,800 ㎡</p> <p>라. 건물연면적 : 기존 23,031.35 ㎡ 금회 226.65 ㎡ 제 23,258 ㎡</p> <p>마. 사업시행자 : 채단법인 서울의국인학교 유지재단 대표이사 고일선</p> <p>바. 사업의 준공예정일 : 1989.3.30</p> <p>사. 수용할 토지 : 없음</p> <p>아. 허가도서 : 별첨 (생략)</p>	<p>◎영등포구고시제 88-20 호</p> <p>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변경허가</p> <p>1. 영등포구고시 제 87-6 호 (87.3.31) 및 동 고시제 88-10 (88.5.13)로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및 변경허가된 영등포구 양경동 1가 247번지의 3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변경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p> <p>1988.8.20 영 등 포 구 청 장</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당</th> <th>초</th> <th>변</th> <th>경</th> </tr> </thead> <tbody> <tr> <td>가. 사업시행지</td> <td>영등포구양경동 1가 247, 248, 248-1</td> <td></td> <td>영등포구양경동 1가 247</td> <td></td> </tr> <tr> <td>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td> <td>도시계획사업 (시장) 기계상가 신축공사</td> <td>영등포종합</td> <td>과</td> <td>동</td> </tr> <tr> <td>다. 사업시행자</td> <td>영등포구양경동 1가 247 (주)영등포종합기계상가 대표이사 박갑문</td> <td></td> <td>영등포구양경동 1가 247 (주)영등포종합기계상가 대표이사 박갑문의</td> <td>115인</td> </tr> <tr> <td>라. 사업규모</td> <td>대지 7,513.70 ㎡ 건물연면적 14,224.82 ㎡</td> <td></td> <td>변경 없음</td> <td></td> </tr> <tr> <td>마. 사업기간</td> <td>'87.4.19 - '89.3.31</td> <td></td> <td></td> <td></td> </tr> <tr> <td>바. 수용 또는 처분</td> <td>사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기권 및 자목과 소유권이위의 권리명세서 - 생략</td> <td></td> <td></td> <td></td> </tr> <tr> <td>사. 토지소유자와 공사설계도면</td> <td>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에 규정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생략</td> <td></td> <td></td> <td></td> </tr> <tr> <td>아.</td> <td>공사설계도면 - 생략</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당	초	변	경	가. 사업시행지	영등포구양경동 1가 247, 248, 248-1		영등포구양경동 1가 247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시장) 기계상가 신축공사	영등포종합	과	동	다. 사업시행자	영등포구양경동 1가 247 (주)영등포종합기계상가 대표이사 박갑문		영등포구양경동 1가 247 (주)영등포종합기계상가 대표이사 박갑문의	115인	라. 사업규모	대지 7,513.70 ㎡ 건물연면적 14,224.82 ㎡		변경 없음		마. 사업기간	'87.4.19 - '89.3.31				바. 수용 또는 처분	사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기권 및 자목과 소유권이위의 권리명세서 - 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공사설계도면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에 규정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생략				아.	공사설계도면 - 생략				
구 분	당	초	변	경																																										
가. 사업시행지	영등포구양경동 1가 247, 248, 248-1		영등포구양경동 1가 247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시장) 기계상가 신축공사	영등포종합	과	동																																										
다. 사업시행자	영등포구양경동 1가 247 (주)영등포종합기계상가 대표이사 박갑문		영등포구양경동 1가 247 (주)영등포종합기계상가 대표이사 박갑문의	115인																																										
라. 사업규모	대지 7,513.70 ㎡ 건물연면적 14,224.82 ㎡		변경 없음																																											
마. 사업기간	'87.4.19 - '89.3.31																																													
바. 수용 또는 처분	사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기권 및 자목과 소유권이위의 권리명세서 - 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공사설계도면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에 규정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생략																																													
아.	공사설계도면 - 생략																																													

구 공 고			인 영	 				
<p>◎ 양천구공고제 52 호</p> <p style="text-align: center;">관 인 신 조 공 고</p> <p>서울특별시 양천구 관인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월제 4동 민원분소의 관인을 신조하였기 공고합니다.</p> <p>1. 사용개시일: 1988.9.1 2. 관인명</p>			공인명	신월제 4동장의인 (분소민원용) 및 제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직 인</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제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월제 4동장의인 분소민원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월제 4동 분소민원용</td> </tr> </table>			직 인	제 인	신월제 4동장의인 분소민원용	신월제 4동 분소민원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0 auto; width: 80%;">사업소고시</div> <p>◎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19 호</p> <p>하천기속점용 및 변경허가 하천법 제 2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계속점용 및 변경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직 인	제 인							
신월제 4동장의인 분소민원용	신월제 4동 분소민원용							
1988. 8. . 양 천 구 청 장			1988. 8. . 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					
허 가 년월일	위 치	지 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 가 를 받 은 자		
'88. 8.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여 의도동 85-1 번지선의 14 개소 (한강)	하천	1,394.205 m ²	식용료판매시설 (판매대 및 부 대시설)	1988.8.27- 1989.8.27	서울특별시 강 남 구 논 현 동 7-3	창훈실업주식 회사 대표 이사 윤재철	

<p>◎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20 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 2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허</p>		<p>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88. 8.29 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p>													
허가 년월일	위 치	지 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자									
						주 소	성 명								
88. 8.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여 의도동 10 번지선외2 개소 (한강)	하천	174.87㎡ (개소당 58.29㎡× 3개소)	이동식음식점 설치	1988.3.29- 1989.8.29	서울특별시 강 남 구 논 현 동 7-3	창훈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재철								
<p>◎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21 호 선박운항허가고시 한강구역내 유선영업에 대하여 하천 법제 25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 의 운항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 25 조</p>		<p>제 4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2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1988. 8.24 한 강 관 리 사 업 소 장</p>													
<p>○ 선박운항 허가내용</p> <table border="1"> <tr> <th>수 허가자</th> <th>위 치</th> <th>목 적</th> <th>내 역</th> </tr> <tr> <td>위세모대표이사 유 병 언</td> <td>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85-1 하천</td> <td>유선업 경영을 위한 선박운항</td> <td>소형유림선 5척, 황포돛 단배 2척, 나룻배 2척</td> </tr> </table> <p>○ 허가기간 : 88.8.24 ~ 88.12.31</p>								수 허가자	위 치	목 적	내 역	위세모대표이사 유 병 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85-1 하천	유선업 경영을 위한 선박운항	소형유림선 5척, 황포돛 단배 2척, 나룻배 2척
수 허가자	위 치	목 적	내 역												
위세모대표이사 유 병 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85-1 하천	유선업 경영을 위한 선박운항	소형유림선 5척, 황포돛 단배 2척, 나룻배 2척												
<p>사업소공고</p> <p>◎ 농촌지도소공고제 1 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파기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 칙 제 7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p>		<p>이 직인등록 및 파기 신고하고 농 규칙 제 11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88. 8.29 농 촌 지 도 소 장</p>													

<p>1. 사용개시 및 폐기일자: 1988.8.29</p> <p>2. 사용직인: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경리관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지출원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물품관리관</p>		<p>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기업세출의 원금출납원</p> <p>3. 폐기직인: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분입경리관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분입지출원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분입물품 관리관</p>	
등 록 인		폐 기 직 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경리관인 및 물품관리관인	공인명	지출원인 및 기업세출의 원금출납원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분입경리관인 및 분입물품관리관인	공인명	분 입 지 출 원 인

사 령			
◎ 1988년 8월 27일자 기능 직공무원 파견해제 영계 307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한상규	종로구보건소 (서울올림픽대비 특정지역방역반) 파견해제	영등포보건소	지방운전원 (기능 10등급)
기능 직공무원 파견 영계 308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윤소일노	서울올림픽대비조직위원회 (수송 단) 파견 ('88.8.27-'88.10.5)	충무파	지방운전원
◎ 1988년 8월 16일자 간호 직공무원 파견해제 영계 344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천선욱	강서구보건소 파견해제	노원구보건소	지방간호사
정은선	시립아동병원 파견해제	시립정신병원	"
4급공무원 파견 영계 345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기영창	교통기획과 파견 (88.8.16-88.10.3)	내무국	지방서기관
이윤복	보건위생과 파견 (")	"	"
조윤희	강동구 파견 (")	"	"
손동수	송파구 파견 (")	"	"
양승주	강남구 파견 (")	"	"
박인용	사회과 파견 (")	"	"

◎ 1988년 8월 16일자 8,9 급 공무원 경 고 명제 346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박 복 만	불문(경고)	남산공원관리사무소	지방행정서기	
이 기 범	"	종합운동장	"	
강 병 렬	"	아동병원	지방행정서기보	
◎ 1988년 8월 18일자 5 급 기술직공무원 전보 명제 347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위	직 급
최 용 호	건설생활과 제장 요원	한강관리 사업소	녹지 1계장	지방임업기과
6 급 이하 공무원 파견 명제 348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조 성 린	건설행정과 파견('88.8.18- 12.31)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이 기 현	"	송과구	지방행정주사	
김 병 곤	"	양정과	지방행정주사	
노 수 만	주택기획과 파견('88.8.18- 12.31)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이 두 규	"	중 구	지방행정주사보	
윤 필 호	"	구로구	"	
김 기 락	"	서초구	"	
강 학 성	사회과 파견('88.8.12-12.31)	양천구	"	
최 정 수	"	동작구	"	
6 급 이하 공무원 전보 명제 349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서 춘 식	인 사 과	건설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박 찬 수	건설행정과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	

◎ 1988년 8월 4일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특별임용령 제 350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최선수	지방임업기사	은평구	임업기사
전상호	임업기사	녹지과	지방임업기사
◎ 1988년 8월 19일자 지방고용직공무원 파견령 제 351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조철호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 ('88.8.20-'88.10.3)	성북구보건소	지방방역기사
서계택	" "	서대문구 "	"
홍우상	" "	마포구 "	"
박종복	" "	은평구 "	"
이웅만	" "	동작구 "	"
이장수	" "	관악구 "	"
◎ 1988년 8월 20일자 8급공무원 파견령 제 352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두한	서울시선편리공단 파견 ('88.8.20-'89.8.19)	내무국	지방부이사관
◎ 1988년 8월 19일자 8급이하기술직공무원 징계처분령 제 353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전동현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제 1, 2호에 의거 "전책"이 처함	남산공원관리 사무소	지방임업기원
◎ 1983년 8월 17일자 10등급기술직공무원복직령 제 354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여만상	복직을 명함	총무과	지방운전원 (기능 10등급)

◎ 1988년 8월 20일자 6급이하기술직및기능직공무원파견				병제 35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영범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무지원반)파견('88.8.20-'88.10.3)	강남구	지방보전기사	
김승호	"	성북구	지방보전기사보	
이홍우	"	보건위생과	"	
김진홍	"	노원구보건소	지방운동원	
박창수	"	영등포구보건소	"	
◎ 1988년 8월 23일자 4급이하공무원전보				병제 356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버진환	건전생활과장 직무대리	목동지구개발사업소관리과장	지방서기관	
김홍만	건전생활과 진흥계장	성동구	지방행정사무관	
김정근	" 개발계장	구로구	"	
최용호	" 시설계장	한강관리사업소	지방임업기과	
신영도	"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	
최규철	"	목동지구개발사업소	"	
백철	"	영등포구	"	
◎ 1988년 8월 24일자 6급이하공무원전보				병제 35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나성석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은평구	지방행정주사보	
◎ 1988년 8월 22일자 기술직공무원전직임용				병제 358호
성명	발령사항	발령직급	현부서	직급
장점설	지적과	지방지적기사	도시계획과	지방토목기사

◎ 1988년 8월 24일자 지방직공무원 파견				제 359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유항기	송파구보건소 파견 ('88.8.25-10.3)	도봉구보건소	지방방역기사	
최종만	강동구보건소 파견 (")	중랑구 "	"	
최희선	마포구보건소 파견 (")	강서구 "	"	
정삼용	송파구보건소 파견 (")	강남구 "	"	
◎ 1988년 8월 26일자 간호직공무원 전보				령제 360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은관	노원구보건소	도봉구보건소	지방간호사	
이광숙	"	"	"	
최순이	"	"	"	
김은태	"	"	"	
유한옥	"	"	"	
◎ 1988년 8월 25일자 의료직공무원 파견				령제 361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윤진규	서울지방검찰청 파견 ('88.8.25-'89.1.31)	의약과	지방약사	
정영수	"	성북구보건소	"	
◎ 1988년 8월 26일자 기술직공무원 징계처분취소				령제 362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수근	'89.3.25 자 전책자본을 서울 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 원의 결정 (98-52) 에 의하여 동일자로 취소함	강동구	지방건축기원보	

◎ 1988년 8월 26일자 6급이하기술직공무원선진				명제 363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권상호 오준업	건강생활파 "	농지과 올림픽건축 담당관	임업기사 지방건축기사	
◎ 1988년 8월 24일자 8급공무원승진				명제 364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탁병오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서울시립대학교 사무국장이 보함	서울시립대학교 사무국장직무 대리	지방서기관	
◎ 1988년 9월 1일자 6급이하공무원과검				명제 365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수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언어 지원단) 파견근무를 명함 ('88.9.1-'88.10.5)	급수과	지방행정서기	
김영만	"	영동포구	"	
김윤령	"	중구	지방행정주사보	
김태기	"	구로구	지방전기기사보	
박성배	"	농지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이재수	"	종로구보달소	"	
임선석	"	삼동구	"	
전용익	"	간로자회관	"	
최희숙	"	강남구	지방지적기원	
이동호	"	"	지방행정서기	
이기대	"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보	
정종량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등록 운영단) 파견근무를 명함 ('88.9.1-'88.10.5)	시민과	지방행정주사보	

성 명	발 령 사 항	원 부 서	직 급
강 회 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의무 지원단) 파견근무를 명함 ('88.9.1-'88.10.5)	보건환경연구소	지방보건연구사
이 완 중	"	"	지방별정직 6급상당
이 상 칠	"	"	지방별정직 7급상당
임 귀 철	"	"	"
박 기 순	"	"	지방운전원 (10 등급)
김 옥 남	"	"	"
◎ 1988년 8월 25일자 5급공무원파견			경력 366호
성 명	발 령 사 항	원 부 서	직 급
최 진 호	대통령경호실 파견 ('88.8.25-'89.8.20)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 1988년 8월 27일자 지방별정직 7급상당신규임용			경력 369호
성 명	발 령 사 항	원 부 서	직 급
세 운 책	지방별정직 7급상당에 임한 7호봉을 급합 주택개량과 근무를 명함	신 규	
◎ 1988년 8월 29일자 6급이하공무원파견			경력 370호
성 명	발 령 사 항	원 부 서	직 급
박 철 성	편광달당판 파견 ('88.9.1-'88.10.3)	중보구	지방행정서기
윤 금 영	"	중 구	"
김 석 진	"	"	"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진환	관광담당관 파견 ('88.9.1-'88.10.3)	중 구	지방행정주사보
백승용	"	용산구	지방행정서기
장동하	"	"	지방행정서기보
김배활	"	성동구	"
김광두	"	"	지방행정서기
김미경	"	동대문구	"
장래욱	"	"	지방행정서기보
이치환	"	중랑구	지방행정서기
김호걸	"	"	"
박성택	"	"	지방행정서기보
이효진	"	성북구	지방행정서기
나선호	"	"	"
우광열	"	도봉구	"
김정택	"	"	"
김성렬	"	노원구	"
박영환	"	"	"
김훈익	"	은평구	지방행정서기보
노성호	"	"	"
김경자	"	서대문구	지방행정서기
구선완	"	"	"
이계원	"	마포구	"
이진표	"	"	"
박성근	"	양천구	"
유준희	"	"	지방행정서기보
이광재	"	강서구	지방행정서기
김원영	"	"	지방행정서기보
김종환	"	구로구	지방행정서기
이영	"	"	지방행정서기보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광복	판공담당관 파견 ('88.9.1-'88.10.3)	영등포구	지방행정서기
윤용남	"	"	지방행정서기보
김일준	"	동작구	지방행정서기
유승근	"	"	지방행정서기보
김진성	"	관악구	지방행정서기
김현숙	"	"	지방행정서기보
권영욱	"	서초구	지방행정서기
노영호	"	강남구	"
이동신	"	송파구	"
박기훈	"	강동구	"
김영익	"	시립정신병원	"
하경세	강동구 파견 (선사주거지관리요원) ('88.8.29-'88.12.31)	문화담당관	지방행정직 6급상당
◎ 1988년 8월 25일자 기술직 7급공무원추서			령제 37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남우현	지방전기기사보에 추서함	양천구지	지방전기지원
◎ 1988년 8월 29일자 5급기술직공무원전보			령제 37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강용선	한강관리사업소	내무국	지방전기기사
◎ 1988년 9월 1일자 의료직공무원전보및 파견			령제 37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춘자	송파구	동부병원	지방약사
윤화순	아동병원파견 ('88.9.1-'89.8.31)	동작구보건소	"
이은경	동부병원파견 (")	송파구보건소	"

◎ 1988년 8월 31일과 6급이하공무원전보및과전				영계 374 호
성명	발령사당	원부서	직급	
김정일	서초구 과전	동작구	지방행정주사	
심정수	진전생활과	중 구	지방행정주사보	
장덕진	"	성동구	"	
차순강	"	중랑구	"	
이병록	"	영등포구	"	
김정자	"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송경희	마포구	양천구	"	
박순철	양천구	시정개발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서울특별시